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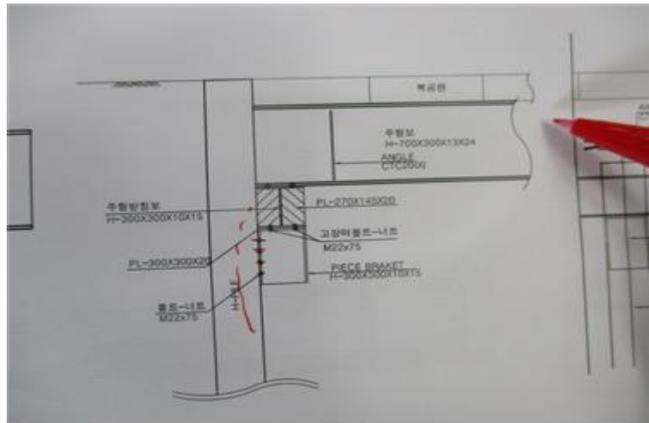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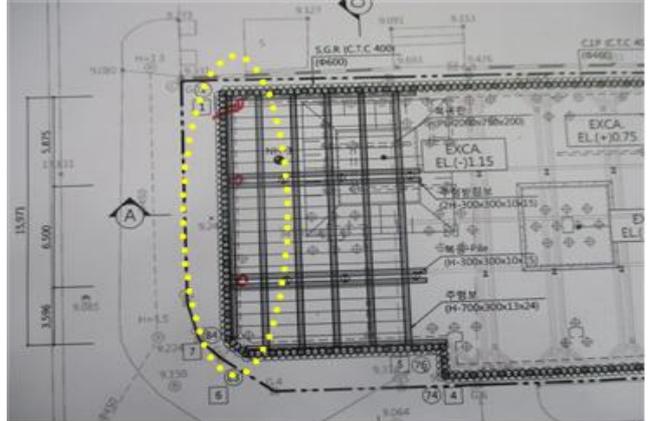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08.07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홍민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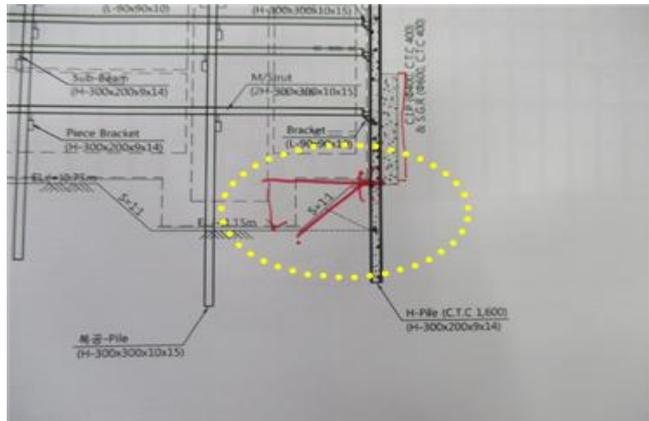
### 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건축부)

- CIP에 브라켓을 달아 주형보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방서 규정과 지지력을 재검토하기 바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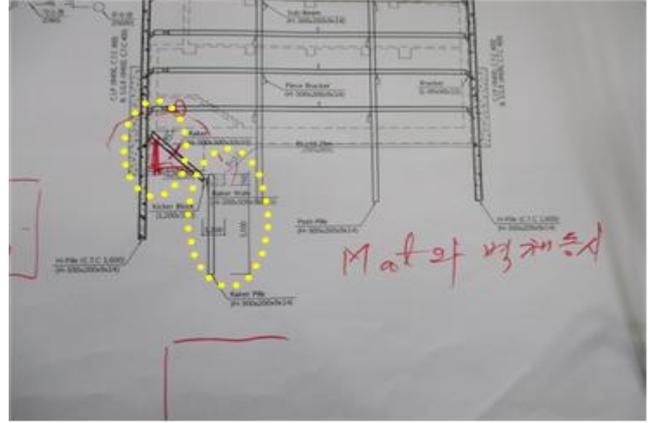
### 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건축부)

- 현장의 지층구조가 복잡하고 차수 그라우팅이 전단면이 아닌 상황에서 사질토 지반의 소단폭 500mm 정도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벽체의 변위를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



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건축부)

- CIP 외 엘리베이터 피트실에 추가설치되는 가시설(Raker) 해체시 벽체의 변위가 생기지 않도록 피트실 기초 타설후 바로 철거하지 말고 벽체 콘크리트 타설 때 까지 존치토록 시공순서 등을 재검토하기 바람
- 모래층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Kicker-Block은 지지력 및 변위를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



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건축부)

- 굴착 작업전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변 지반 및 인접구조물의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
- 현장 내 우수 및 지표수 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로를 정비하기 바람



○ 전도재해 예방(건축부)

- 공간이 협소한 상황이라 건설기계 작업에 간섭되는 가설웬스 지지대를 철거하여 강풍 발생시 가설웬스가 전도될 우려가 있으니 보강을 하거나 장비 작업이 끝나는 즉시 원상복구하기 바람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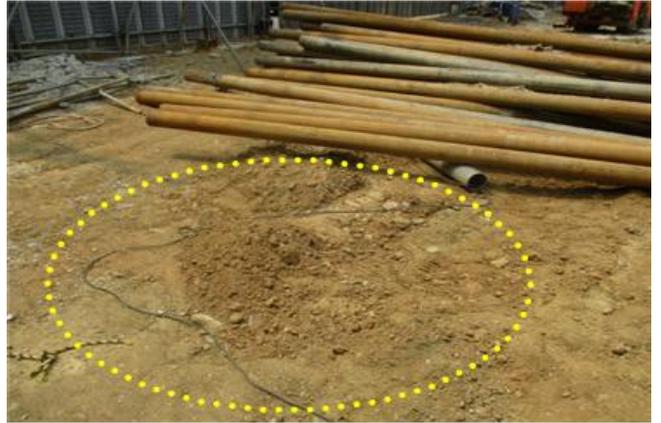
웬스 지지대 철거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가설전선이 바닥에 깔려 있어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공처리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가설웬스 주변에 모래마대가 훼손되어 미관상 좋지 않으며 빗물에 모래가 보도로 흘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정비하기 바람

